

#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

소관부서 : 노인장애인과

제정 2019·11·14 조례 제1552호  
일부개정 2022·9·30 조례 제1857호  
(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 
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 
일부개정조례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 및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장애인가족”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·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·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장애인가족 지원센터”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① 이천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.

**제4조(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)**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
2.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이 제시하는 복지정책 관련 의견이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**제5조(지원사업)**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
2.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
3. 장애인가족에 대한 가족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
4.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복지연구
5.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상담지원
6.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)**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7조(자문기구)**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·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「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설치한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·심의를 받을 수 있다.

**제8조(업무의 위탁)**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2·9·30>

② 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·9·30 조례 제1857호,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 
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